



**국가중요
과학기술자료
등록 안내서**





목 차

1장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무엇인가요?	6
	1-1. 제도 소개	6
	1-2. 어떤 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나요?	6
	1-3. 제도 상징 표식	6
2장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7
	2-1. 소유자, 관리기관의 등록 신청	7
	2-2. 서류검토	7
	2-3. 서류심사	8
	2-4. 현장조사	8
	2-5. 예비심사	8
	2-6. 종합심사 상정 자료 공고 및 의견청취	9
	2-7. 종합심사	10
	2-8. 등록 공고	10
	2-9. 등록증 교부	10
3장	등록 이후 관리·지원	11
	3-1. 관리실태조사란?	12
	3-2. 등록 자료 지원	13
4장	등록제도 질의응답	14
5장	관련 법령 및 고시	16
6장	관련 서식 및 등록 사례	25
	6-1. 관련 서식	25
	6-2. 등록 현황	31
	6-3. 등록 사례	33

1장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무엇인가요?

1-1. 제도 소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찬란한 과학기술 역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와 의미가 담긴 자료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을 줄 표적입니다. 따라서, 자료들에 담긴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자료들을 등록하여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승하는 제도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과학기술자료: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1-2. 어떤 자료들이 등록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소재하며 다음의 기준(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2)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에 관한 과학기술자료들이 등록 대상입니다.

- ①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 ②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 ③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 ④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1-3. 제도 상징 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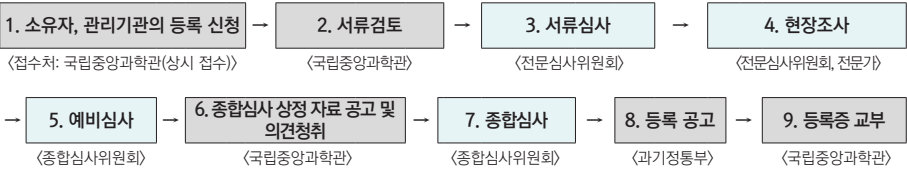


- 국문명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영문명 : National Scientific Heritage

의미

교차하는 원의 형태는 우주 시공간의 변화와 역사적 흐름을 의미하고 그 역사가 빛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료 중 하나인 **혼천의**를 배치함으로써,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를 상징하는 표식은 역사와 시간, 과학을 형상화함

2장 | 등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2-1. 소유자, 관리기관의 등록 신청

■ 신청 자격(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3)

-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소유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과학기술자료인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

■ 신청 기간: 상시접수

■ 신청 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 공문 등으로 제출

- 접수처: 우)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6장, 관련 서식]
- ②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6장, 관련 서식]
- ③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 접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이 필요한 서류는 사전요청을 하여야 함

2-2. 서류검토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는 단계

■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할 경우, 신청자에게 아래의 결과를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 보완 요청
 - ①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신청자가 과학관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반려
 - ① 신청 자료가 위·변조 또는 조작된 경우
 - ② 신청 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 ③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 ④ 신청 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⑤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2-3. 서류심사

- 서류검토 이후,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심사함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
-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

〈전문심사위원회〉

- 개요: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자연사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사
-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
- 역할: 서류심사, 현장조사, 그 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2-4.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함
 - 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 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 환경
 -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 현장조사자: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과 관련 전문가 1인 이상 추가 파견
- 현장조사 이후 예비심사 전까지 신청자에게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음

2-5. 예비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심사에 상정이 필요한 자료인지 심사
- 예비심사의 내용은 종합심사에 활용

〈종합심사위원회〉

- 개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상정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
- 구성: 15인 이내
- 역할: 예비심사, 종합심사,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그 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2-6. 종합심사 상정 자료 공고 및 의견청취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할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30일간 공고하여 각 계의 의견을 청취

○ 각 자료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공고

- ① 명칭
- ②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 ③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 ④ 자료 소재지
- ⑤ 자료 유형
- ⑥ 상정 사유
- ⑦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의견 제출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6장.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의견접수 기간 내에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제출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nsh@korea.kr) 또는 공문 등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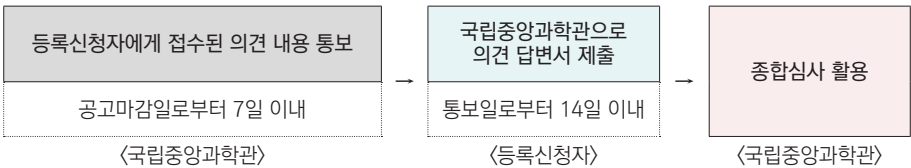
※ 우편의 경우, 의견청취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우)341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담당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①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
- ③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의견청취 후 절차



※ 의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의견 답변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6장. 관련 서식]을 사용

2-7. 종합심사

-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심사위원회는 등록 기준 적합여부와 등록 필요성을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는 신청 자료의 명칭, 등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2-8. 등록 공고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 공고함

※ 공고 상세위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 알림 > 공지사항
국립중앙과학관(<https://www.science.go.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 ②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 ③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 ④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 ⑤ 자료 소재지
- ⑥ 자료 유형
- ⑦ 등록 사유
- ⑧ 등록 일시

2-9. 등록증 교부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경우, 자료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에 등록증을 교부함

3장 | 등록 이후 관리·지원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아래와 같이 유형과 형태를 구분하여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자료 유형〉(과학관법 시행령 별표1)

분류	세분류	내용
기초과학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찰 및 실험을 통하여 그 원리를 이론화·체계화하는 기초이론 분야
응용과학	공학·농학·수산학·의학·약학 등	기초이론을 총괄적으로 응용하여 복합적 현상을 규명하는 분야
산업기술	에너지·정보통신·우주항공·선박·자동차·기계·중화학·메카트로닉스·의류·토목·건축·식물가공·금속·섬유·요업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제 기술 분야
과학기술사	농사기술과 농기구의 발달사, 의식주생활과 도구류의 발달사, 흙·금속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돌·나무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뼈·가죽 가공공정과 도구류의 발달사, 천문지리의 발달사, 종이와 인쇄기술의 발달사, 의학의 발달사, 군사기술과 무기류의 발달사, 국악기의 발달사, 도량형의 발달사 등	과학기술의 역사와 그 원리를 총괄적으로 규명하는 분야
자연사	동물·식물·인류·고생물·광물·지질·천문·기상·해양·자연·생태·환경 등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 및 현상과 자연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분야
기타		시설물 또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분야

〈자료 형태〉(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관련)

구분	예시
기록	연구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연구계획서, 도면, 실험노트, 공문, 기사, 발표문, 회의록, 일기, 편지, 메모 등 문헌 자료와 음성·영상·디지털자료 등
기반	연구실, 구조물, 기념비, 연구단지, 공업단지 등 기술 기반시설 및 기념자료 등
성과	발명품, 양산품, 부족품, 특허품, 샘플, 모형, 시제품, 제작품, 표본, 암석, 화석 등 과학기술 성과자료 등
활동	실험장비, 관측기구, 컴퓨터, 교육기자재, 각종 유품 등 과학기술 활동 관련 자료 등

3-1. 관리실태조사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자료의 소재지, 소유자, 자료 변형여부 등을 점검하여 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추진할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태조사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이루어집니다.

※ 관리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정기점검

○ 등록증 발급대장, 등록 대장에 기록된 내용의 변동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

■ 정밀점검

- 등록 자료의 보존·관리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
- 자료 형태에 따라 기록 자료는 3년, 기반·성과·활동 자료는 5년 주기로 점검
- 절차

등록 자료 소유자·관리기관에게 실태조사 2~4주 전까지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사 사실을 알림



국립중앙과학관 담당조사원이 유선연락 또는 등록 자료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자료의 소재지·소유자 변경, 자료 변형여부 등에 대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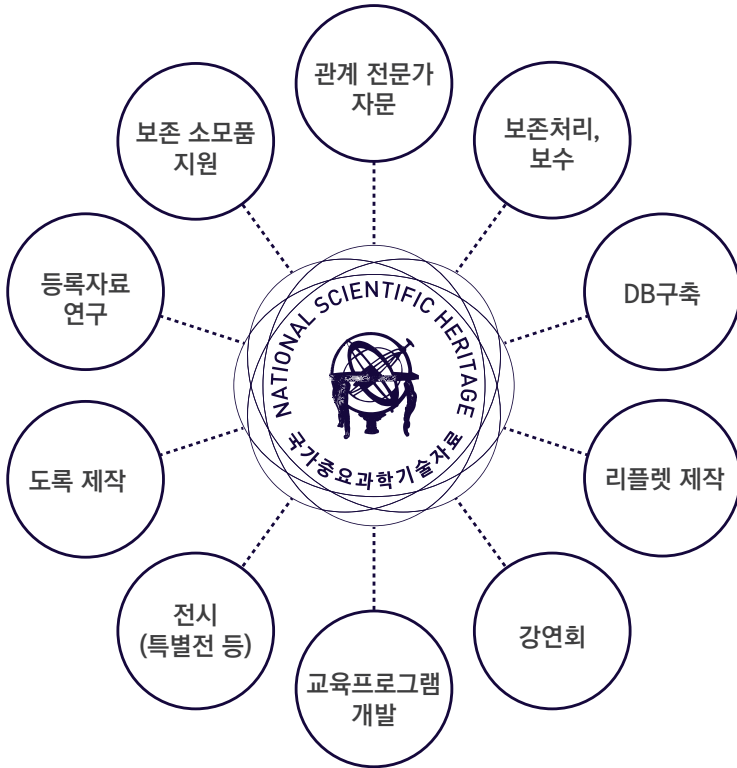
등록 자료의 소유자, 관리기관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조사 결과를 알림



등록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보존처리, 보존 소모품 지원 등 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실시

3-2. 등록 자료 지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후, 자료의 원활한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4장 | 등록제도 질의응답

Q1. 등록 신청은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신청 주체는 자료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과 기관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Q2. 자료가 등록되면 소유권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제는 자료의 관리를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소유자의 권리와 권한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Q3. 살아있는 생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생물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장의 등록기준과, 3장의 자료형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자료의 분류(과학관법 시행령 별표 1), 등록순번, 해당연도 등의 순서로 정해집니다.

예) 제 기초과학-73 (2021)호, 제 응용과학-10 (2021)호

Q5. 심사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는 매년 1회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서류심사일로부터 210일을 넘지 않습니다.

☞ 심사 절차: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예비심사 → 의견청취 → 종합심사

Q6.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심사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예비심사, 종합심사와 등록 말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전문심사위원회는 3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심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과학·응용과학· 산업기술 분과위원회	기초과학, 응용과학, 산업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한국 전통 과학기술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자연사 분과위원회	동식물, 광물 등 자연사분야에 해당되는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장을 조사	10명 이내

☞ 종합심사위원회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15명 이내).

Q7. 등록과 관련된 서식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안내서 내 [6장. 관련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 ①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 > 과학관 소개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과학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등록 신청서), 제2호서식(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 의견 제출서, 의견 답변서

- ①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 해당 공고 및 의견청취 게시글
- ② 국립중앙과학관 (<https://www.science.go.kr>) > 과학관 소개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 ③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행정규칙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견 제출서), 제11호서식(의견 답변서)

Q8. 등록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존·관리와 활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존·관리: 보존처리와 보수 지원, 보존을 위한 소모품 지원, 관계 전문가 자문 등

☞ 활용: 특별전 등의 전시, 교육 등

※ 지원은 자료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자료의 보존·활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진행됩니다.

5장 | 관련 법령 및 고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과학관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 제2조(정의)**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과학관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67호, 2019. 6. 18., 일부개정]

-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신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 | |
|----------------|--------------------|
| 1. 명칭 | 2.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
|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 4. 소재지 |
| 5. 자료 유형 | 6. 등록 사유 |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1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등록 절차

제2조(등록 신청·접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제3조(서류검토)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

의 소유자, 다만 국·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자가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 ②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
 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3.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4조(전문가 심사) 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가 심사는 서류심사, 예비심사, 종합심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의 경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일로부터 210일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기간은 보류 의결, 의견청취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류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2.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 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제6조(현장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
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
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
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 것으로 본다.

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제10조(종합심사) ① 종합심사위원회는 신청자료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③ 종합심사 의결결과가 '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종합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제11조(등록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선정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번호
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3.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4.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요청 시 비공개)
5. 자료 소재지
6. 자료 유형
7. 등록 사유
8. 등록 일시

제3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전문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1.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분과위원회
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
3. 자연사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
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3. 그 밖에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 ⑥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⑦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출석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점 평균 결과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⑨ 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⑩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⑪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종합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
 2.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
 3.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 ④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⑨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의2(안건 구분 및 처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전문심사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등록신청자료 안건 및 등록관련 안건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다만, 전문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에는 '보류'의결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가결 2. 부결 3. 보류 4. 접수

③ 보류는 안건 보완 후 재심사를 요구하는 처리행위이며, 접수는 보고안건에 대한 처리행위를 말한다.

제14조(심의·의결 제척·회피) 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제척(除斥)된다.

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2.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
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등록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여,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3(관계자의 참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참여 전문심사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전문가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등록 자료 관리 등

제18조(기록관리)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관리한다.

제19조(등록말소)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

6장 | 관련 서식 및 등록 사례

6-1. 관련 서식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자	성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 개인은 미기재
	유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법인 []그 외 법인 []비법인단체(개인회사 포함) []그 외 개인 []기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만 기재)		
	소유자와의 관계 []소유자 본인 []관리기관(국·공유재산만 해당)		
업무 담당자 * 개인의 경우 미기재	소속부서		성명
	전화(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대상 자료	명칭 (고유모델번호:)		
	소재지(보관 장소)		
	관리 위탁 * 관리를 위탁한 경우만 기재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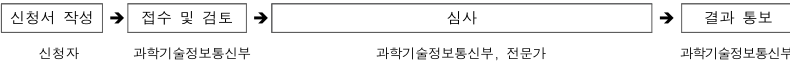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1.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3쪽 중 제1쪽)

※ 본 설명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자료의 명칭

1. 자료 개요

용도	원	현
보존 상태		
수량		
소재지(보관장소)		
규모	(가로) cm (세로) cm (높이) cm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자료 연혁(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과정·방법 등 요약)

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3쪽 중 제2쪽)

2. 신청대상 자료의 과학기술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역사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신청대상 자료의 교육적 가치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그 외 등록·지원 필요성

※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설명서 작성방법 안내	
1. 자료 개요	
1-1. 용도	신청대상 자료가 사용되었던 당시의 용도와 현재 용도를 서술
1-2. 보존 상태	신청대상 자료의 보존 상태 정도를 서술
1-3. 수량	신청대상 자료의 수량을 기재 예시) 단일 권의 경우 1권 12권이 세트인 경우 1건 12점
1-4. 소재지(보관장소)	신청대상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 장소 기재
1-5. 규모	신청대상 자료의 규모를 가로×세로×높이(cm)로 기재
1-6. 시기	신청대상 자료의 생성·제작·개발·건립된 시기 기재
1-7. 자료 연혁	신청대상 자료의 탄생, 소유자(관리기관) 변경, 훼손 등 현재까지 제작·사용되고 보관되어 온 과정 예시) 1990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발 진행
1-8. 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수리 또는 보존처리를 한 자료거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경우 기재(단, 추측의 경우 추측이라고 반드시 명시)
2. 과학기술적 가치	
2-1. 적합성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된 자료인지 또는 발달과 관련된 정도 서술
2-2. 대표성	새로운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룬 자료인지 또는 특정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서 최초로 제작된 자료인지 등 서술
2-3. 기술적 독창성	외국 기술과 다른 차별적 기술이 적용되어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킨 자료인지 등 서술
2-4. 과학기술발전 파급효과 (타 기술발전 등에 준 효과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자료인지 등 서술
2-5. 희귀성	신청대상 자료의 국내외 보존·보관 수량이 적거나 형태·재질·용도가 특이한지 등 서술
3. 역사적 가치	
3-1. 과학기술 계승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정신을 보여주는지, 과학기술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모범이 되는 등 계승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서술
3-2. 과학기술 시대성	당대 생활모습이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자료인지 또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했는지 등 서술
4. 교육적 가치	
4-1. 교훈성	과학기술·역사적 가치가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정도 서술
4-2. 보급성	신청대상 자료의 제작, 활용, 보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서술
4-3. 활용성	전시 등을 통한 활용 가치가 있는지 또는 현재 상태에서 전시·연구·교육이 가능한지 등 서술
5. 그 외 등록·지원 필요성 등	
등록·지원 필요성, 그 외 추가적 내용 서술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반려사유
의견제출 공고자료	명 칭	
의견 제출자	성 명	
	주 소	
	전 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견 및 제출 사유		

※ 의견 및 제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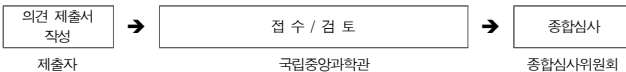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제출자 제출서류	1. 의견 및 제출사유 2.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6호서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2. 등록 현황

연번	자료명(소유·관리기관)	주요 특징	등록번호
1	대한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56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만든 최초의 1:100만 지질도	기초과학-1 (2019)
2	현신규 임목육종학 자료 (국립과천과학관)	벌거숭이산을 울창한 산으로 바꾸는 산림녹화에 기여한 임목육종학자료	응용과학-1 (2019)
3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 개량 자료(국립과천과학관)	1950년대 한국의 무 개발 관련자료 및 국내 최초 기념 논문집	응용과학-2 (2019)
4	허문회 통일벼 자료 (국립과천과학관)	1960년대 쌀 자급을 위한 통일벼 개발 자료	응용과학-3 (2019)
5	이호왕 유행성출혈열 자료 (국립과천과학관)	1970~1980년대 유행성 출혈열 병원체 발견 및 백신 개발 자료	응용과학-4 (2019)
6	개인용 컴퓨터 SE-8001 (삼보컴퓨터)	1981년에 일반 국민들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료	산업기술-1 (2019)
7	한국형 전자교환기 TDX-1 (국립중앙과학관)	1985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제작하여 KT가 운영했던 전자식 자동전화 교환기	산업기술-2 (2019)
8	64메가 디램(64M DRAM) (삼성전자)	1992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웨이퍼와 반도체를 개발한 자료	산업기술-3 (2019)
9	칠정산 내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42년에 정인지 등이 중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날짜 계산과 절기 예보를 기술한 자료	과학기술사-1 (2019)
10	칠정산 외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44년에 이순지 등이 회회력(아라비아 천문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날짜 계산과 절기예보의 정밀도를 높인 자료	과학기술사-2 (2019)
11	동의보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13년에 허준이 의서들, 임상학적 경험 등의 치료법을 엮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의서	과학기술사-3 (2019)
12	통영촉우대 (국립중앙과학관)	1811년 또는 1871년에 촉우기를 안정하게 올려놓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만든 대석자료	과학기술사-4 (2019)
13	핵융합 플라즈마 발생장치 SNU-T-79(국가핵융합연구소)	1979년 개발 착수하여 1984년 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핵융합 실험장치이며 인력양성에 기여	기초과학-2 (2020)
14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공군박물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한 항공기('04년 복원)	산업기술-4 (2020)

15	대동여지전도(국립중앙과학관)	우리 조상들의 산천인식체계를 기반으로 제작한 조선시대 대중용 소축적 지도로 우리 과학기술의 독창성이 잘 드러남	과학기술사-5 (2020)
16	동국팔도지도(국립중앙과학관)	정상기의 백리척 작도법, 방안좌표 등을 도입한 정확성이 높은 조선시대 지도	과학기술사-6 (2020)
17	세습원자시계 KRISS-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내 독자개발 원자시계(세계6번째), 해당 기초과학 연구 기반 형성에 기여	기초과학-3 (2020)
18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 설비((주)케이티넷)	국내 최초 국제통신안테나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적, 교육적 가치 보유	산업기술-5 (2020)
19	광통신용 광섬유 초기개발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 광기술 연구의 토대가 되어 국내 초고속인터넷 기여 및 과학기술적 가치 보유	산업기술-6 (2020)
20	동의보감(국립중앙도서관)	중의학 대비 민족의학으로 자리매김에 기여 및 의학사적, 교육적 의의	과학기술사-3-2 (2020)
21	자산어보(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 어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류를 시도한 어류 백과사전으로 필사본	과학기술사-7 (2020)
22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동지 화석(목포시(목포자연사박물관))	국내 최대 공룡알 동지화석으로 중생대 백악기 후기의 고지리, 고환경 연구자료	자연사-1 (2020)
23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해남군(해남공룡박물관))	다양한 공룡 서식지 및 공룡과 새가 공존했던 백악기 한반도 남부의 고지리, 고환경 연구자료	자연사-2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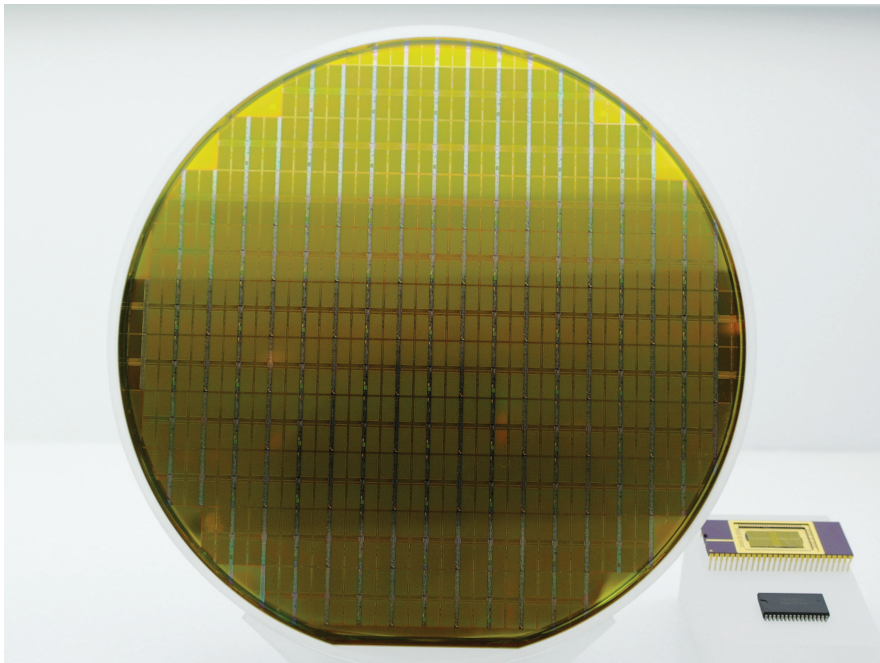
6-3. 등록 사례

■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 분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한국형 전자교환기 TDX-1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85년 7월 제작(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19. 12. 3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64메가 디램(64M DRAM)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92년 8월 개발(삼성전자주)
소유자(관리기관)	삼성전자주
자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등록 일시	2019. 12. 31.



(사진제공 : 삼성전자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이호왕 유행성출혈열 자료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70~1980년대, 1988년(이호왕)
소유자(관리기관)	국립과천과학관
자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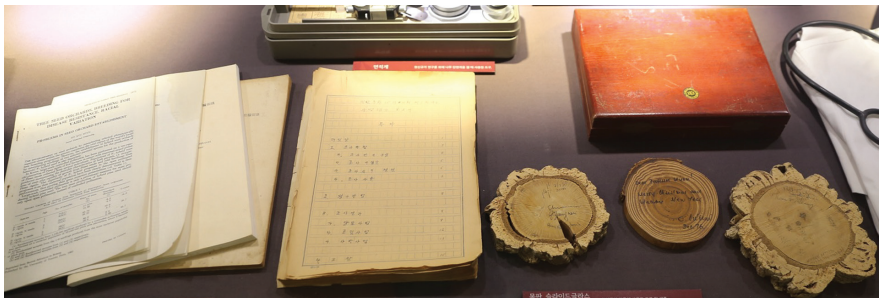
(사진제공 : 국립과천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허문회 통일벼 자료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60~70년대(허문회)
소유자(관리기관)	국립과천과학관
자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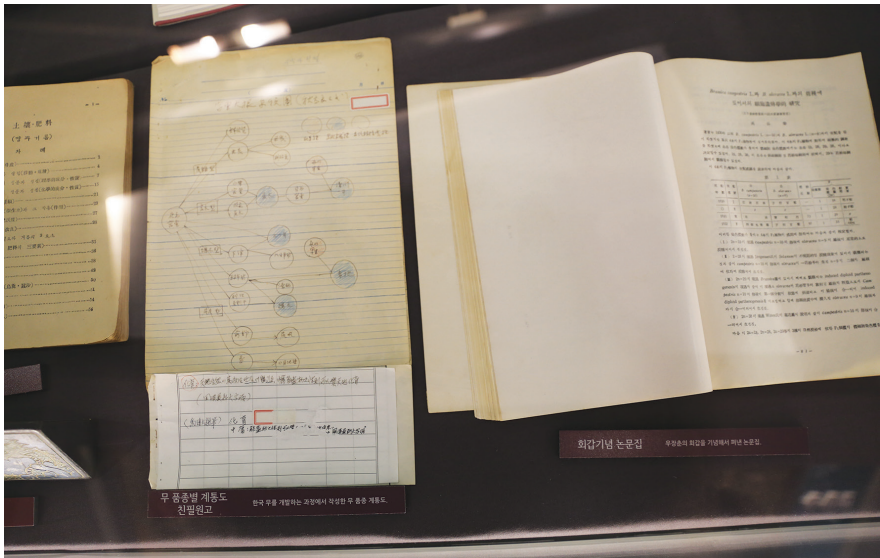
(사진제공 : 국립과천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현신규 임목육종학 자료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49년~1970년대(현신규)
소유자(관리기관)	국립과천과학관
자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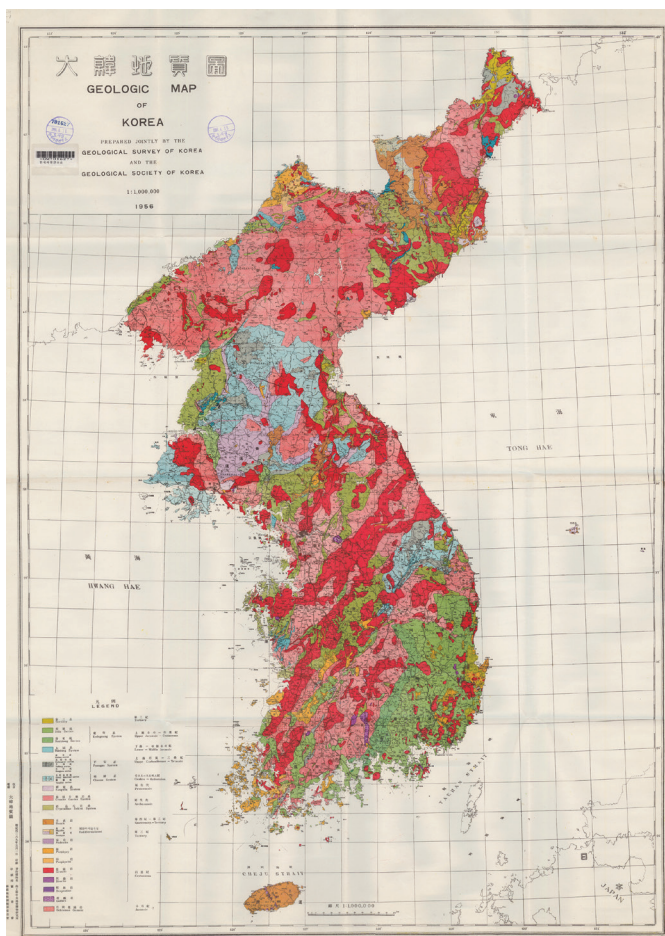
(사진제공 : 국립과천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50년대(우장춘)
소유자(관리기관)	국립과천과학관
자료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등록 일시	2019. 12. 31.



(사진제공 : 국립과천과학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대한지질도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56년 제작(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유자(관리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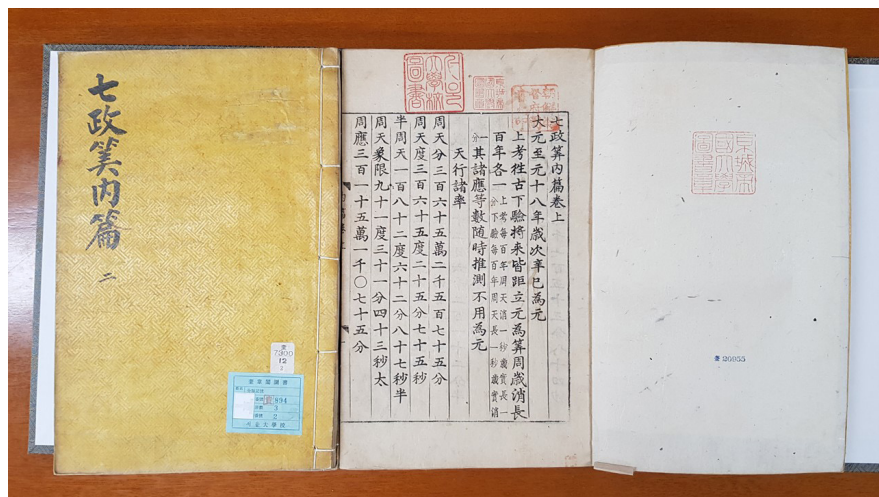
(사진제공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개인용 컴퓨터 SE-8001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81년 1월 개발(㈜삼보컴퓨터)
소유자(관리기관)	(주)삼보컴퓨터
자료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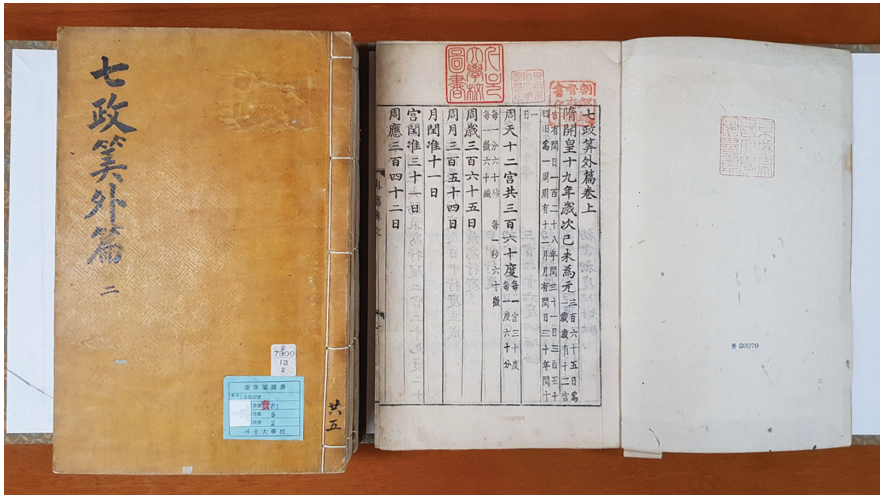
(사진제공 : 삼보컴퓨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칠정산 내편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442년,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록 일시	2019.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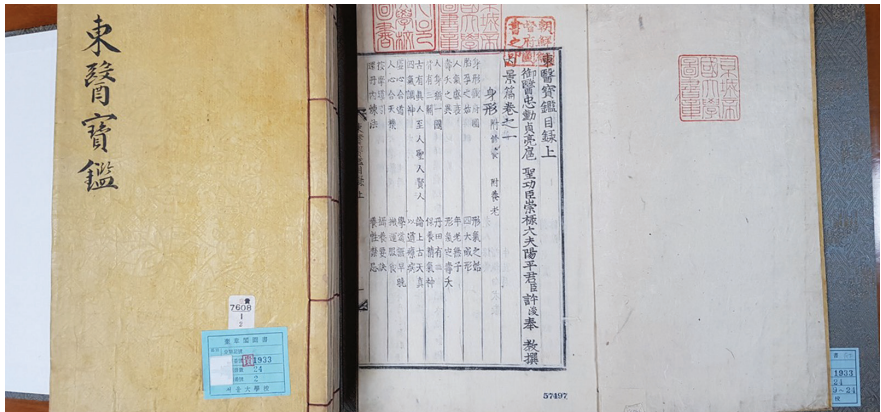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칠정산 외편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444년,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록 일시	2019. 12. 31.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동의보감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613년,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록 일시	2019. 12. 31.



〈동의보감(奎貴 1933)〉



〈동의보감(奎3553)〉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통영측우대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811년 또는 1871년,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19. 12. 3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핵융합 플라즈마 발생장치 SNUT-79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974~1984년 제작(서울대학교)
소유자(관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20. 7. 1.



(사진제공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제작자)	1953년 제작(공군기술학교)
소유자(관리기관)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자료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등록 일시	2020. 7. 1.



(사진제공 : 공군박물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대동여지전도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20. 7.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동국팔도지도
생성·제작·개발·건설 시기	조선시대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20. 7. 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세슘원자시계 KRISS-1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988~2008년 제작(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유자(관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료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록 일시	2020. 7. 1.



(사진제공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 설비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969년 제작, 1970년 개통((주)케이티넷)
소유자(관리기관)	(주)케이티넷
자료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주)케이티넷)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광통신용 광섬유 초기개발품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978~1983년 개발(KIST)
소유자(관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동의보감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613년, 조선시대 (허준)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자산어보
생성·제작·개발·건립 시기	1946년 필사본 (1814년 제작, 정약전)
소유자(관리기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등지 화석
생성·제작·개발·건설 시기	중생대 백악기
소유자(관리기관)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료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목포자연사박물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명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
생성·제작·개발·건설 시기	중생대 백악기
소유자(관리기관)	해남군 해남공룡박물관
자료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등록 일시	2021. 1. 29.



(사진제공 : 해남공룡박물관)